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해설

Comment of Amended Energy Using Rationalization Law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 행정사무관

강 남 훈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시행 배경

1973년말 중동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제1차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정부에서는 먼저 사치성 광고용 네온사인의 설치규제, 텔레비젼 방영시간의 단축, 차량·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행회수 단축,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에 의한 단순 에너지 소비억제와 절약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행정규제에 의한 일시적, 산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74년 1월 4일자로 열관리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관리법은 197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정책을 이끌어 온 근거가 되었으나, 그 추진대상에 있어서 산업부문 연료 및 열의 관리와 이의 효율적인 이용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정·상업·수송부문 및 전기분야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행정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사태로 발발된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은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정책의 필요성을 가져 온 계기가 되었다. 즉, 종래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억제에 의한 단순절약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1979년 12월 28일자로 종래의 열관리법을 폐지하고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 에너지 절약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종전의 열관리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열관리법의 목적 및 대상은 석탄을 비롯한 연료의 유효한 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석유·석탄·전기·신재생 에너지 등 전반적인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종래의 열관리법에 비해 대상 에너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둘째로, 열관리법의 경우 산업부문의 에너지 관리만을 관장해 왔던 데 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산업부문은 물론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사용 부문을 그 관리대

상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열관리법은 행정규제만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세제·금융상의 유인시책도 아울러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아울러 집단 에너지공급에 대하여도 지원시책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취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종래 추진되어 온 각종 규제중심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완하여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시책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과 이의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난방·공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대규모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포괄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산업체는 물론 일반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의식이 정착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각 부문에 걸쳐 내재하던 에너지 낭비요인이 제거됨과 아울러 에너지 이용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질의 강화노력과 '85년말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등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수지의 기조를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그동안 에너지 절약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 주었던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 반면에, 에너지 사용의 제한 등과 같은 각종 규제중심의 시책들로 인하여 산업활동이 제약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산업활동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인 것임을 감안하여 산업활동을 제약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위주의 시책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민간 자율경제 체제의 정착에 부응하여 에너지 절약시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과 이의 확대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이나 세제상의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선진 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중시하고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각종 기준의 제정이나 지도·조언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세제·금융상의 지원시책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종전 규정중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에너

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운영성과가 미흡한 제도의 보완·개선

① 타율적·강제적인 명령제도를 권고제도로 개선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리 지도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사용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관리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 관리진단결과 당해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 시행결과 이러한 타율적 강제적인 에너지 관리진단 명령제도 및 시정 명령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각각 에너지 관리진단 권고제도와 시정 권고제도로 개선함으로써 민간자율경제 체제의 정착에 부응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목표원단위 설정·관리제도의 보완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목표량, 즉 목표 원단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82년~'87년) 총 549개 업체, 1,020개 품목에 대하여 목표원단위를 설정·관리하여 온 결과, 생산공정 및 기술의 다양성 때문에 정부에서 목표원단위를 일률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데는 기술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 기간중 생산제품·투입원료 또는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공정의 변화 등으로 목표치의 설정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이의 계속적인 조정·보완에 따르는 관련 산업체의 자료제출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개별 에너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목표원단위를 설정·관리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목표원단위의 설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목표 주행거리 설정·관리제도의 개선

종전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량 등 수송수단별로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 주행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단위연료당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미 설정된 목표 주행거리에 미달된 차량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미달된 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부과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3년 5월 11일자로 차량의 단위연료당 목표 주행거리(km/ℓ)를 설정·고시하고, 차량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달성토록 한바 있으나 벌과금을 부과한 예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목표 주행거리 미달시 정부가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현재의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는 대신에 그 미달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구매수요를 억제하는 간접규제방식을 통하여 차량의 제조업자가 수송수단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스스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제도의 보완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 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매체(정기간행물 등)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할 때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이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 표시 기자재의 제품안내서 등과 같은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때에도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에너지 이용효율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

에너지 사용시설의 효율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기타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시설의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같은 에너지사용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그 시설의 설치나 이를 이용한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기타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에너지 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제도의 운용결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시설의 설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종전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이 법에 의한 열공급사업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경우, 각각 관계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어 이중규제를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②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관련제도 개선

종전에는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검사대상 기기에 대하여는 제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제조검사 뿐만 아니라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 검사에 있어서도 기기별 특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가급적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사용을 위한 검사(계속사용 검사)중 안전검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성능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기기를 정비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대상 기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③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등의 삭제·폐지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에너지의 전환 및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공중접객업 기타 에너지 사용처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 차량 기타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하거나 관계부처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정 및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법 개정시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1,2차 석유파동과 같이 에너지 수급 사정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원활한 에너지 수급조정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에너지는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용 에너지의 전환이나 사용할 에너지의 결정 등은 특정 에너지 사용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전제로 개별 에너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결정할 사항이므로 에너지 수급상의 이유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상의 이유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활동의 저해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는 석유사업법·석탄산업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제한조치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내의 냉·난방 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고, 동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역시 이번 법 개정시 이를 삭제·폐지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개 건축물의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므로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3) 시행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용도 확대

현행법은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차관, 석유류 특별소비세로부터의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30억원, 47.5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절약형시설 투자, 대체 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으며 1987년말 현재 동기금의 조성금액은 13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 기금에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예 : 에너지 관리 진단 시설, 경제운전 실습차량 등)의 취득과 대여사업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다.

② 특정 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확인 제도의 신설

검사대상 기기가 아닌 특정 열사용 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자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이러한 설치·시공확인업무를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와 아울러 설치·시공 확인업무에 따르는 수수료를 시공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시공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산업용 대형 보일러 등과 같은 검사대상 기기의 경우 위해방지와 효율확보를 위하여 제조·설치 및 계속사용시에 일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용 소형 보일러 등과 같은 검사대상 기기가 아닌 특정 열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정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 불량시공으로 인한 위해요인 발생과 소비자의 불편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같은 설치·시공 확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불량시공 방지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에너지 관리기준 등의 보완

종전에는 에너지 관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산업부문과 건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업·건물·수송 등 전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의 에

너지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기준에 따라 에너지 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에너지 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에너지 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에너지 관리자 채용제도 개선

종전에는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채용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채용 또는 퇴직된 때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⑤ 에너지관리공단 운영의 활성화

에너지관리공단에 종래의 상임이사(3인이내) 이외에 산업계·학계·금융계 등으로부터 3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를 새로이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향후 조치계획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보안·정비한 후 '89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져온 에너지 절약의식이 이완되어 에너지 낭비요인이 재연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규제조치의 완화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교육·홍보 시책도 펴 나갈 방침이다.

3. 주요 개정내용 신·구 조문 대비

개 정 전	개 정 후
제 4 조 (목표원단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목표원단위)을 정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1 항의 목표원단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제 4 조 (목표원단위)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종전의 제 2 항 삭제
제 5 조 (에너지소비절약목표의 설정)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시·도별로 에너지소비절감목표를 정할 수 있음. ②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에너지 소비 절감목표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 5 조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종전의 제 1 항 삭제
제 7 조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사용 에너지의 전환,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기타 에너지 사용의 제한조치를 명하거나 관계부처의 장에	※ 종전의 제 7 조 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제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음.	
제 8 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 ①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제 1 항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인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제 8 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신고) ①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 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에너지 사용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음.
제 11조 (에너지 관리사항 등) ①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료의 연소·전환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에너지 관리사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제 11조 (에너지 관리기준 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에너지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일정되는 때에는 에너지 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 13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 ①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② 제 1 항의 지정방법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함.	제 13조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 ①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함. ②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가 채용 또는 퇴직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③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 관리자가 퇴직된 때에는 다른 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함.
제 14조 (에너지 관리진단 명령)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 진단기관을 정하여 명할 수 있음. ③ (생 략)	제 14조 (에너지 관리진단권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 15조 (시정명령)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	제 15조 (시정권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손실요인의 감소를 위하여

개 정 전	개 정 후
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 손실요인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감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종전의 제 2 항 삭제
제 17조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 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내의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음.	※ 종전의 제 17조 삭제
제 18조 (목표주행거리의 공고)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등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할 수 있음.	제 18조 (목표주행거리의 공고)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제 1 항의 목표주행거리에 미달될 때에는 그 미달된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차량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제 1 항의 목표주행거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신 설)	제 28조의 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①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 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함.
(신 설)	제 28조의 3 (설치·시공확인의 대행) ① 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확보하여야 함.
제 31조의 2 (제조·설치검사 등) ①~④ (생 략)	제 31조의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	⑤ …… 다만 도지사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

개 정 전	개 정 후
	는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음.
⑥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일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⑥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제51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 1.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1조 (기금의 사용 등) ① ..... 1.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취득 및 대여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 (임 원)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둠 1. ~2. (생 략) 3. 이사 3인 이내 ② (생 략)	제58조 (임 원)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이사 6인 이내(3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신 설)	제74조 (수수료) .... 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 설)	제81조 (벌칙) .... 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 설)	제82조 (벌칙) .... 2.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서 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제8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신 설)	제84조 (과태료) .... 2. 에너지 관리자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